

#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, 노사관계안정 등 서울시의 경제사회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,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, 노동시장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.
- 나. 노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임기,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위원 임기, 해촉,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(안 제4조의 2, 제4조의3, 제5조제2항, 제6조제3항 등)
- 나. 노동시장의 분야별, 전문적,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의제별·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둠(안 제7조)

다. 협의회 회의와 운영지원 및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발굴 및 관리, 협의회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조항 신설(안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8. 1. ~ 8. 21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##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”을 “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, 노동자 대표위원, 사용자 대표위원, 시의회 의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4조의3(위원의 해촉)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2.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
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의 제목“(위원장)”을“(위원장 등의 직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제3항 전단 중 “3분의 2 이상”을 “과반수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

을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특별위원회)”를“(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특별위원회”로, “사람”을 “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특별위원회”를 각각 “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① 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, 사회,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의제별·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”을 “실무위원회는”으로, “협의회”를 “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”으로 한다.

① 협의회, 분과위원회 및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등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의2제5항 중 “협의회”를 “실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

및 제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협의회, 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(이하 “협의회 등”이라 한다)는”을 “협의회등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, 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사무국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, 사무국은 협의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운영 및 총괄한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,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) ① 시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공사·공단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종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협의회등”을 “협의회등 및 실무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3조) 중 “협의회의 운영”을 “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, 사용자, 주민 및 서울특별시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<u>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 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⑤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,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한시적으로 수시위원회에 위촉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제4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, 노동자 대표위원, 사용자 대표위원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 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, 위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<u>제4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</u></li> <li><u>2.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</u></li> <li><u>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</u></li> <li><u>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</u></li> <li><u>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위원장) ①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회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의결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는 경우</u></p> <p>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부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과반수----- ----- . &lt;후단 삭제&gt;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<u>노사분규</u></p>	<p>제7조(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특별위원회의</u>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<u>사람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<u>특별위원회의</u>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특별위원회의</u>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<u>협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실무위원회</u>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	<p><u>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) ① 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, 사회,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, 의제별·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</u>--- 위원-----.</p> <p>③ <u>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</u>-----.</p> <p>④ <u>분과위원회,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</u>-----.</p> <p>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<u>협회의, 분과위원회 및 의제개발·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등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<u>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</u> <u>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</u> <u>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</u> <u>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노동</u> <u>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</u> <u>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</u> <u>같은 수로 한다.</u></p> <p>1. <u>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</u> <u>람</u></p> <p>2. <u>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</u> <u>람</u></p> <p>3. <u>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</u> <u>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</u> <u>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</u> <u>풍부한 사람</u></p> <p>④ <u>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</u> <u>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</u> <u>다.</u></p> <p>⑤ <u>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</u>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</u> <u>의 위원장이 정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④ <u>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실</u> <u>무위원회가 속한 협의회등에 보</u> <u>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----- ----- <u>실무위원</u> <u>회가 속한 협의회등--</u>. 다만, 실 <u>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</u> <u>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 및 제</u> <u>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<u>협의회, 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(이하 "협의회등"이라 한다)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<u>협의회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성실이행 의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성실이행 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<u>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</u></p> <p>② <u>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사업무 담당과장(담당관)이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2조(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시장은 협의회</u>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3조(사무국) ① 위원장은 협의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, 사무국은 협의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운영 및 총괄한다.</p> <p><u>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외 상근직원</u>을 둘 수 있으며,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<u>③ 사무국장은 협의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.</p> <p><u>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</u>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4조(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) ① 시장은 원활한 노사</u>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수당 등) ① <u>협의회</u>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<u>협회의</u>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<u>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협회의</u>의 위원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하는 공사·공단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15조 (수당 등) ① <u>협의회</u>등 및 <u>실무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운영세칙) ----- ----- <u>협회의</u> 및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----- ----- -----.</p>

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비용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주요개정 내용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  
(예상금액 연 4억 9천만원 수준)

#### 가. 서울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(제12조)

- 임대료(12개월) : 96백만원
- 인건비(5인) : 236백만원
- 사무관리비 : 162백만원
- 위원회 회의수당(본협의회, 하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) : 52백만원
- 노사민정아카데미(4회) : 60백만원
-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: 50백만원

※ 한시적인 경비 : 280백만원

- 사무국 보증금(1회) : 50백만원
- 사무국 시설 구조변경(내부 시설비, 1회) : 30백만원
- 사무국 설치 첫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용역 : 200백만원

### 4. 작성자

- 노동정책담당관 실무사무관 강민구(2133-5520)